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구급활동착용기록장치 사용의 법적 근거 마련〉
■ 위성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775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위성곤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5. 4. 11.
3. 회 부 일 : 2025. 4.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은 119구급대원의 구급활동 방해의 예방 및 증거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이른바 ‘바디캠’을 운용 중임.

그러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등 위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바디캠 사용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구급활동 바디캠의 합법적인 사용을 위하여 ‘구급활동착용기록장치’를 법률에서 정의하고, 그 사용 요건과 영상음성기록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및 사용기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여 구급활동 수행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기록장치인 ‘구급활동착용기록장치’의 사용근거, 사용 요건, 사용절차 및 관리 방안 등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23조의4(구급활동착용기록장치의 사용 등)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은 구급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여 구급활동 수행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기록장치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이하 이 조에서 “구급활동착용기록장치”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구급대원이 구급활동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하여 기록하는 경우로서 이동형 영상 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때에는 불빛, 소리, 안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고지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영상음성기록을 전송·저장하는 때에 고지하지 못한 사유를 기록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구급활동착용기록장치로 기록을 마친 영상음성기록은 지체 없이 제5항에 따른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영상음성기록을 임의로 편집·복사하거나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소방청장은 구급활동착용기록장치로 기록한 영상·음성을 저장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구급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그 밖에 구급활동착용기록장치의 사용기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은 현재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화재진압·구조·구급·생활 안전 등) 중 정당한 직무수행 및 폭행 예방 등을 위하여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촬영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함)를 운영하고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 기기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나눌 수 있는데¹⁾, 소방청 및 시·도 소방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일종인 웨어러블 카메라(Wearable camera)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총 7,148대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2. ~ 6. (생략)
7.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 7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據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①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개정 2023. 9. 12.>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 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기기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② 법 제2조제7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신설 2023. 9. 12.>
1. 착용형 장치: 안경 또는 시계 등 사람의 신체 또는 의복에 착용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2. 휴대형 장치: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디지털 카메라 등 사람이 휴대하면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3. 부착·거치형 장치: 차량이나 드론 등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據置)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소방청의 웨어러블 카메라 보유현황2>

(2025. 1. 1. 현재)
(단위: 개)

시도명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3,511	4,661	5,454	6,927	7,148
서울	76	526	528	531	551
부산	173	209	211	212	211
대구	34	80	205	828	833
인천	155	188	263	315	398
광주	45	46	103	163	165
대전	87	87	87	110	161
울산	26	158	172	198	198
세종	28	28	28	30	30
경기	994	1,061	971	1018	1019
강원	444	464	527	830	867
충북	110	123	200	227	264
충남	297	388	544	514	500
전북	224	299	309	341	341
전남	231	267	350	446	448
경북	259	318	484	580	581
경남	141	185	189	294	291
제주	99	99	152	165	165
창원	88	135	131	125	125

※ 일부 시도의 경우 전년 대비 보유량 감소 사유는 노후 및 고장 등 불용·폐기 사유임.
(자료: 소방청)

2) 소방청은 2024년 12월에 소방청 훈령인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당초 구급장비로 포함되어 있던 웨어러블 카메라가 보조장비로 변경되었다고 설명하면서, 현재는 웨어러블 카메라가 화재, 구조, 화재조사 등 전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함.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기본법³⁾인 「개인정보 보호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5조제1항),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함)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제25조의2제4항 및 제25조제7항4)).

3)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3. 24., 2023. 3. 14.>

②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①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의 구조·구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 ⑤ (생략)

<「개인정보 보호법」상 일반적인 개인정보 수집 규정(제15조제1항)>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소방공무원의 업무는 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⁵⁾ 소방

⑥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23. 3. 14.>

⑦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⑧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5) 「소방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활동은 본질적으로 긴급성을 띄고 있음.

이에 소방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소방기관의 영상정보처리 기기 설치·운영 시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소방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필요한 업무 절차를 제시하고자 「소방현장 활동 개인영상정보 관리 가이드라인⁶⁾」을 2022년 3월에 제정하여 시행 중임.

<「소방현장 활동 개인영상정보 관리 가이드라인」내용>

제1장 개 요

1. 제정 목적
2. 용어 정의
3. 기본원칙 및 주요내용

제2장 항목별 세부내용

1. 영상수집의 제한
2. 최소수집의 원칙
3. 영상정보처리기기 임의조작 금지
4. 영상촬영 안내 및 공지
5.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
6. 관리책임자의 지정
7.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8. 보관 및 파기
9. 영상정보의 열람권 보장
10.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제3장 벌칙⁷⁾

1. 벌칙

6) 소방청은 「소방현장 활동 개인영상정보 관리 가이드라인」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소방청 직원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내부지침이라고 설명함.

7) 개인영상정보를 오·남용, 외부 유출 및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음.

개정안은 119 구급대원이 바디캠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사용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그 사용 요건과 영상음성기록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및 사용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이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15조제1항제2호)’,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5조제1항제5호)’ 등에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소방활동은 본질상 긴급성·공공성이 크다는 점에서⁸⁾ 현재도 소방청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능함⁹⁾¹⁰⁾.

119 구급대원을 포함한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인 웨어러블 카메라는 특정인에 대한 근접 촬영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방

8) -국회는 2024년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개정하여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에 관하여 규율하도록 입법하였음(2024. 1. 9. 본회의 의결, 2024. 1.30. 공포 및 시행, 법률 제20153호).

-다만, 경찰공무원의 업무 중 교통단속과 같은 업무는 긴급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 「개인정보 보호법」만을 근거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등* 소방공무원의 업무와 경찰공무원의 업무 성격이 상이하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출처: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박완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0048호), 2023.4., 7-8면.]

- 경찰착용기록장치 관련 조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 참조

9)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견임.

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점, 같은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공개된 장소에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19 구급대원이 구급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착용 또는 휴대하여 구급활동 수행 과정을 촬영하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활동에 특별히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관련한 내용을 현행법(「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보임.

개정안은 처리가능한 개인정보의 범위를 ‘영상 및 음성’으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안 제23조의4제1항)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은 ‘음성’ 정보의 수집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 일반적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규정에 따라 음성 정보 수집 및 수집의 한계를 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¹¹⁾.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¹²⁾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하며 건강정보와 같은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나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점¹³⁾을 고려할 때,

11) 소방청은 웨어러블캠의 종류(제조사, 모델)에 따라 영상만 수집되는 것도 있다고 설명함.

12)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함(「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5호)

13)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

특히 구조·구급, 화재진압 등을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이 사용하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주로 신체적 위급 상황에 처한 사람을 근접 촬영하는 경우가 빈번할 것이므로 119 구급대원 등 소방공무원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원칙과 한계 등을 소방 관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경우 국민의 개인정보가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의 취지는 119구급대원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사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인데, 이를 소방 관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지 여부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사용 목적 및 범위,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 보임.

<개정안과 소방청에서 현재 시행중인 가이드라인 내용 비교>

구 분	개정안(안 제23조의4)	「개인정보 보호법」 및 「소방현장 활동 개인정보상정보 관리 가이드라인」
근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23조의4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제1항
규율 대상	-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려는 자(법 제25조의2제1항 본문) -현장 소방활동 중인 소방공무원(가이드라인 제1장 2. 용어정의 가.)
처리가 능한 개인정 보의	- 영상 및 음성	-영상 등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구 분	개정안(안 제23조의4)	「개인정보 보호법」 및 「소방현장 활동 개인정보상정보 관리 가이드라인」
범위		사물의 영상(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25조의2제1항). ·(영상 수집의 제한) 소방업무 활동 중에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외 사용을 금지하며, 현장지휘관의 통제하에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가이드라인 제2장 항목별 세부내용)
(정의)	-구급활동착용기록장치: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은 구급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여 구급활동 수행 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기록장치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안 제1항)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據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법 제2조제7호의2) -❶ 소방공무원이 손이나 근무복에 부착 또는 소방차에 설치하여 사람이나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기기 // ❷ 소방자동차에 설치된 CCTV(블랙박스* 제외) 및 업무용으로 지급된 휴대폰·캠코더·카메라,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등(가이드라인 제1장 2. 용어 정의)
촬영시 고지 의무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고지하여야 함(안 제2항)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함(법 제25조의2제3항) -(영상촬영 안내 및 공지) 소방기관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영상촬영시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제2장 항목별 세부내용 4.)
고지의 무의 예외	-불가피하게 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영상음성기록을 전송·저장하는 때에 고지하지 못한 사유를 기록하는 것으로 대체(안 제3항)	-소방기관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재하여 고지(제2장 항목별 세부내용 4.)
기록 관리	-기록을 마친 영상음성기록은 지체 없이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영상음성기록을 임의로 편집·복사하거나 삭제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4항)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법 제25조의2제6항 및 제25조제6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임의조작 금지) 파이어캠·웨어러블캠에서 휴대폰 등으로 영상을 이동하여 함부로 편집하거나 삭제할 수 없음.(제2장 항목별 세부내용 2.)

구 분	개정안(안 제23조의4)	「개인정보 보호법」 및 「소방현장 활동 개인정보상정보 관리 가이드라인」
	-소방청장은 구급활동착용기록장치로 기록한 영상·음성을 저장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안 제5항)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법 제25조의2제7항 및 제25조제6항) -촬영한 현장영상은 반드시 지정된 개인영상정보처리시스템(내부통제 시스템*)에 저장하여야 함(가이드라인 제2장 항목별 세부내용 중 3. 영상정보처리기기 임의조작 금지 중)
기타	-제1항에 따른 구급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그 밖에 구급활동착용기록장치의 사용기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6항)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입법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첫째, 개정안과 같이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사용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개정안은 119구급대원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대상으로 그 사용 요건 및 사용 기준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현재 소방공무원은 구조·구급 활동 및 화재진압, 생활안전 등을 포함한 모든 현장 소방활동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¹⁴⁾.

따라서, 모든 소방활동을 포괄할 수 있는 동 법에 한정해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사용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둘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사용 목적과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사용 목적과 관련해서, 개정안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방지 등을 위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사용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이고, 소방청은 현재 구급활동 등 소방활동 방해의 예방 및 증거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웨어러블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개정안을 입법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사용 목적을 명확히 밝혀 법문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사용 범위와 관련해서, 개정안은 구급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구급활동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안 제23조의4제1항) 구급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23조의4제6항).

14) 소방청이 보유하고 있는 웨어러블 카메라는 총 7,148대이고 이 중 119구급대가 운영하는 웨어러블 카메라는 총 5,860대임(소방청 보유량의 82.0%).

구급활동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반영한 첨단 소방장비 도입 시에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관련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 등 중요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에서 구급활동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소방청 및 서울소방본부 등은 현재 웨어러블 카메라는 구급활동 등 소방활동 방해의 예방 및 증거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운용 중이라고 설명하면서 구급대원 활동을 영상으로 기록·관리할 경우 대원의 현장 활동을 위축할 수 있으므로 법률 개정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구급활동기록장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환자보호자와의 분쟁 발생에 따른 구급 활동 위축과 업무 감시 등 업무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므로¹⁵⁾ 법률이 구체적으로 사용 요건 등을 명시하지 않고 일반적·포괄적으로 시행령 등에 위임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15)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문 의 처
02)6788-535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1.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1조 또는 제212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
2. 범죄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전 또는 직후일 것

나.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것

3. 제5조제1항에 따른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등의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4. 경찰착용기록장치에 기록되는 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기록대상자”라 한다)로부터 그 기록의 요청 또는 동의를 받은 경우

5.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6. 제6조에 따라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범죄행위를 긴급하게 예방 및 제지하는 경우

7. 경찰관이 「해양경비법」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해상검문검색 또는 추적·나포하는 경우

8. 경찰관이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수난구호 업무 시 수색 또는 구조를 하는 경우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이 법에서 “경찰착용기록장치”란 경찰관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여 직무수행 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기록장치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10조의6(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고지 등) ① 경찰관이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하여 기록하는 경우로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때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경우로서 불가피하게 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영상음성기록을 전송·저장하는 때에 그 고지를 못한 사유를 기록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을 마친 영상음성기록은 지체 없이 제10조의7에 따른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저장하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음성기록을 임의로 편집·복사하거나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기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7(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의 구축·운영)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은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한 영상·음성을 저장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